

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기획전략본부 운영세칙

제정 2010. 5. 10.

개정 2019. 9. 20.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기획전략본부(이하 “기획전략본부”라 한다) 규정 제4조에 의거 기획전략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획위원회) ①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, 기획전략본부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전략본부장으로 한다.

④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, 위원회를 소집한다.

⑤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발전 및 학사운영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
2. 재정, 예산편성, 시설에 관한 사항
3.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
4. 국제 공동연구와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홍보위원회) ① 홍보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홍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, 기획전략본부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장은 기획전략본부장으로 한다.

④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, 위원회를 소집한다.

⑤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발전기금 모금 등에 관한 사항
2. 농업생명과학대학 홍보에 관한 사항
3. 정기간행물, 영상자료, 기타 홍보물 편집에 관한 사항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칙(제112호, 2010.5.10.)

이 시행세칙은 201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134호, 2019.9.20.)

이 시행세칙은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.